

강 남 구



수신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

지방세기본법 제58조【부과취소 및 변경】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부과취소 하고자합니다.

1. 납 세 자: ********

2. 부과취소사유 : 국세경정에 의한 경정(2015.7월 국세청 통보분)

3. 건수 및 세액

(단위 :원)

취소건수	당 초	취 소	차 액	
3	2,578,503,360	236,383,300	2,342,120,060	

붙임 1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(경정)결정서 1부.

- 2. 지방소득세(법인세분) 부과취소내역서 1부.
- 3. 국세청통보자료 및 안분적용내역 1부. 끝.

주무관	김잔디	지 방 소 득 세 ^{1 팀} 이 덕 비 장	세무2과장	김광수	기획경제국장	08/04 김용운	
협조자							
시행 세두	≃2과-26649	() 접수		()
우 06090	서울시 강남-	· 구 학동로 426 /전송 02-3423-8834	,	angnam.go.k ao.kr	、 (r / 부분공개(6)		,